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홍보 안내 협조 요청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처는 20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 취급의 기록·보관 제도를 폐지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마약류 제조·수입, 유통, 사용 등 모든 취급 정보를 식약처(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로 보고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동 제도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붙임 자료를 송부하오니 회원 대상 보수(연수)교육 등을 통해 안내하는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유관단체에도 동 자료를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교육일정 및 사용방법은 다시 안내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안내 자료 1부. 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신자 대한약사회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수의사회장

주무관

박종숙

사무관

김익상

마약관리과장

전결 2017. 9. 18.

김효정

협조자

시행 마약관리과-11762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마약관리과 / www.mfds.go.kr

전화번호 043-719-2894 팩스번호 043-719-2890 / salmos@korea.kr / 대국민 공개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마약류 취급의 보고 제도 개요 및 시행안내

□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제도’란?

-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조제·투약 등 취급하는 경우 식약처(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로 보고하는 제도

□ 시행일 : 2018년 5월 18일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전 개방 계획(향후 일정 안내)

□ 취급업무 및 보고

취급업무	취급보고	보고시점
마약류 구입	구입보고	(중점) 취급한 날부터 7일 이내 (일반)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마약류 조제(약국)	조제보고	
마약류 투약(의료기관)	투약(조제)보고	
마약류 반품 등 양도양수	양도·양수보고	
사고마약류 등 폐기결과보고	폐기보고	관할 허가관청에서 폐기민원처리 완료한 (중점) 날로부터 7일 이내 (일반)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보고대상 구분

- 의료현장에서 환자 치료행위와 마약류 취급보고 효율성을 고려하여 **일련번호를 보고하는 중점관리대상**과 그 이외 일반관리대상으로 구분

대상	세부 사항	보고항목
중점관리	의료용 마약 또는 프로포폴(예정) 등 식약처장이 공고한 향정신성의약품	제품정보(제품명, 일련번호, 제조번호, 유효기한, 수량 등), 거래자 및 처방정보 등
일반관리	그 외 향정신성의약품, 동물용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제품정보(제품명, 제조번호, 유효기한*, 수량 등), 거래자 및 처방정보 등

* 일반관리대상의 제조번호, 유효기한 항목은 2020.5.18.부터 보고 시행(2년간 유예)

□ 보고 방법

- ① (직접보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입력 또는 보고파일 업로드
- ② (연계보고) 처방·조제프로그램 내 취급 보고기능 활용 보고(가능이 있는 경우)